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,

정비사업의 분양공고 기한이

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,

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한하여

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분양공고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의 규모를

재개발구역 최소 지정기준인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,

정비사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

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